



국 토 교 통 부

수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경유)

제목 질의회신(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관련 질의 및 개선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렌터카연17-0166호(2017.09.11.)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관련 질의 및 개선요청

☐ 답변내용

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를 지정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상에 운전자로 포함한 사람 전부가 운전자격을 갖춘 것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확인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자동차 대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대여자동차 임차인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에서 명확히 제외하여야 하며,
- 운전자 허위기재를 통한 부정 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임대차계약 내용에 본인이 운전자로서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전자격 조회 시기 및 책임 관련

-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대여계약 체결·갱신·변경 시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자동차 장기 임차인이 운전면허 취소·정지된 사실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계약 체결·갱신·변경 시 운전자격 충족여부의 확인을 철저히 하였다면 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과태료 부과 관련

-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격 확인 조회여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단속을 실시하거나 요청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해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버다운으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보관하였다고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③ 우리 부는 임차인 등 운전자격 확인제도의 계도기간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하였으며, 고의가 아닌 이상 계도기간에는 행정처분이 지양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개선요청 관련

-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회원등록 및 이용절차에 관한 충분한 설명 게재와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표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스템 운영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논의를 거쳐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김연우 행정사무관 김선욱 과장 전결 2018. 1. 30. 신윤근

협조자

시행 신교통개발과-246 (2018. 1. 30.)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1 팩스번호 044-201-5579 / dusdn89@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